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

중 요

수 신 회원사 대표

참 조

제 목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개정사항 안내(수의계약 한도 제한 등)

1. 회원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발주·계약 시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특혜·편중을 방지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을 개정하여 2026년 11월 6일(금)부터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.

3. 특히, 이번 개정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**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한도 제한 기준이 신설**되었는바, 회원사께서는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수의계약 체결 및 수주 활동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 내용

가. 1인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체결 제한(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계약상대자)

○ **시·군·구** (세종·제주 포함) : **연간 5회 이하 및 총 2억 원 이하**

○ **시·도** (세종·제주 제외) : **연간 7회 이하 및 총 3억 원 이하**

※ 지자체 본청, 소속 행정기관, 하부 행정기관, 의회사무기구 별로 각각 별도로 집계·적용

나. 적용 예외 및 소액 산입 기준

○ **적용제외** :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공사 계약은 한도 제한 적용 제외

○ **건수제외**(소액) :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제한건수(5회/7회)에는 산입하지 않으나, 제한금액(2억/3억)에는 포함하여 누계 관리

다. 수의계약 배제사유 추가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

라. 모든 수의계약은 공개 항목별 내용 전부를 공개

○ 공개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추가, 전부 공개 명시

마. 기타 주요 개정 내용

○ **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를 한정하는 규정 삭제**

- (현행)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를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로 한정
- (개선)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낙찰에서 배제된 사유도 입찰보증금을 귀속 가능하도록 법 개정 검토

○ **물품·공사 혼재 계약 주의사항 명확화**

- 공사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계약으로 발주 금지 명시

○ **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**

-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최신 단가를 적용하도록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

○ **예정가격 작성 시 발주기관 단가내역 사전공개 신설**

○ **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범위 개선**

바. 시행일 : '26. 11. 6.(금)

붙 임 : 1. 예규 개정 주요내용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) 1부.

2. [개정전문]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. 끝.

※ 붙임자료는 우리도회 홈페이지(www.kosca38.or.kr) - 시·도소식 - 최신공문 6666번 게시물 참고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

담당자 제도개선실 대리 이희승 과장 이정훈 실장 김우배
시행 전건협 경남 제769호 (2026. 11. 5.)
우513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0(전문건설회관 2층)
전화 055-288-8117 전송 055-238-1733 / 전자우편 hsl8911@kosca.or.kr